

#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1. 2.

## 2021 학생 봉사활동 주요내용

구 분	쪽수	주요 내용						
학생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학업성적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근거로 학교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수립</li> <li>○ 학생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li> <li>○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운영</li> <li>○ 봉사활동 시간 기준은 초중고 모두 학교 자율 결정</li> <li>○ <b>코로나19로 중학교 봉사활동 합계시간 기준 한시적 폐지</b></li> </ul>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봉사활동 운영 기준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5 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b>원격으로 실시</b></li> <li>○ <b>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 해</b>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사전 승인</li> <li>○ <b>외부기관 방문 자제</b>, 학년 전체가 동시 참여하는 학교 차원의 실내 봉사활동은 지양, 비대면 봉사활동 가능</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b></li> <li>○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실시</li> </ul> </td> </tr> </tbody> </table>	단계	주요 내용	1~2.5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b>원격으로 실시</b></li> <li>○ <b>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 해</b>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사전 승인</li> <li>○ <b>외부기관 방문 자제</b>, 학년 전체가 동시 참여하는 학교 차원의 실내 봉사활동은 지양, 비대면 봉사활동 가능</li> </ul>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b></li> <li>○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실시</li> </ul>
단계	주요 내용							
1~2.5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b>원격으로 실시</b></li> <li>○ <b>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 해</b>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사전 승인</li> <li>○ <b>외부기관 방문 자제</b>, 학년 전체가 동시 참여하는 학교 차원의 실내 봉사활동은 지양, 비대면 봉사활동 가능</li> </ul>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b></li> <li>○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실시</li> </ul>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시간 인정 : 1일 8시간 이내</li> <li>○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에 분 단위는 절사</li> <li>○ <b>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b> ( <b>코로나19로 비대면 봉사활동 2021학년도 한시적 인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확인 후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li> <li>-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b>활동보고서</b>를 제출</li> <li>-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한 경우</li> <li>-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실시한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li> </ul> </li> <li>○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li> </ul>						

# ☐ ☐    **목 차**    ☐ ☐

- I. 추진 근거 ..... 1
- II. 추진 목적 ..... 1
- III. 추진 방침 ..... 1
- IV. 추진 방향 ..... 2
- V. 세부 추진 계획 ..... 3
  - 1. 봉사활동 계획 수립 ..... 3
  - 2. 봉사활동 계획 실행 ..... 4
  - 3. 봉사활동 평가 ..... 7
- VI.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8
  - 1.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8
  - 2.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 9
  - 3.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 10
  - 4.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14
  - 5. 봉사활동 관련 단체 연계 ..... 14
- VII. 행정 사항 ..... 15
- VIII. 참고 사항 ..... 16

**<참고 자료>**

- 붙임1.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예시) ..... 17
- 붙임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 19
- 붙임3. 봉사활동 추진 체계 ..... 20
- 붙임4. 자주하는 질문(FAQ) ..... 23
- 붙임5. Dovol(자원봉사시스템)-1365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자료 ..... 28
- 붙임6. VMS(인증관리시스템)-1365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자료 ..... 29
- 붙임7. 학생 봉사활동 관련 양식(개인) ..... 30
- 붙임8. 학생 봉사활동 관련 양식(단체) ..... 31
- 붙임9. 학생봉사활동 가정통신문(예시) ..... 32

## I. 추진 근거

---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2022)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1)
-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교육부, 2021~2025)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2021.1.28.)

## II. 추진 목적

---

-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교육자치 확대에 따른 자율적인 학교 봉사활동 활성화
-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 강화

## III. 추진 방침

---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배정하며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운영
-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봉사활동 시간 인정으로 대리, 편법 운영 차단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가 봉사활동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감염예방 관리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

## IV. 추진 방향

### 목표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실행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

### 추진 방향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봉사활동 절차, 인정 기준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인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침 준수,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추진

## V. 세부 추진 계획

### 1 봉사활동 계획 수립

-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근거로 학교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학교별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1교 1봉사활동 동아리』 조직·운영(권장), 『가족봉사단』 및 『사제동행봉사단』 조직·운영(권장)
- 학생·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추진계획 안내,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교원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 기관 및 시간, 원칙 등 안내
  - ※ 학기 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학기 초 및 방학 전 등 연중 수시 교육)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봉사활동 동아리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자율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율동아리활동 계획 이외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 ※ 자율동아리 활동과 개인 봉사활동에 중복 기재하지 않음
- 봉사활동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동요령 준수, 담당교사 사전교육 실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봉사활동 운영 기준 계획서 반영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봉사활동 운영 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2021.1.28.) 참조

단계	주요 내용
1~2.5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시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b>원격으로 실시</b></li> <li>○ 봉사시설(장소), 봉사내용 등을 검토하여 <b>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만</b> 해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사전 승인</li> <li>※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li> <li>○ <b>외부기관 방문 자제</b>,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 차원의 <b>실내 봉사활동은</b> 지양하며, 선플달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 활용 가능</li> </ul>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b></li> <li>○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실시</li> </ul>

## 2 | 봉사활동 계획 실행

### 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예시) : 교감(위원장),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 ○ 역할

-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계획 수립·운영·평가 지원
-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학생봉사활동 관련 학생교육, 교직원 연수, 학부모 홍보 등
- 가족봉사단 및 사제동행봉사단 운영, 결과분석 등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가능

### 나. 『1교 1봉사활동 동아리』 조직·운영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교 1개 이상의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 권장
- 자선 봉사, 교육봉사, 위로공연, 노력 동원, 말벗 되기, 시설 어르신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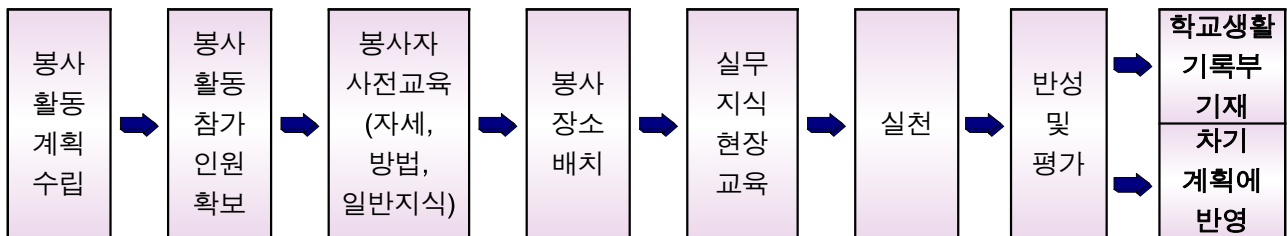
## 다. 『가족봉사단』 과 『사제동행봉사단』 조직 · 운영

- 정의: 학부모와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가족 단위의 봉사활동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함
- 학교 업무 담당부서에서 가족봉사단과 사제동행봉사단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일괄 관리
-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자료 제공, 학교 수준에서 가능한 것 지원
- 가족 단위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유도
- 주말, 방학을 이용한 가족 단위 봉사활동 활성화 적극 권장

※ 가족 단위 봉사활동 참여 시 학교별 봉사활동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리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 라. 봉사활동 절차

###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또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장 자율로 결정한다.
- 봉사활동 시간 기준: 초중고 모두 학교 자율 결정

학교급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비고
	교육과정 내	교육과정 이외(교내)		
초중고	학교장 자율결정	학교장 자율결정	학생 자율진행	

### ※ 코로나19로 중학교 봉사활동 권장시수 2021학년도 한시적 폐지

-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중 교육과정 이외(교내)의 봉사활동 인정 시간에 대한 상한선은 없으나, 계획 수립 시 봉사활동 내용, 대상학생, 기간, 활동시간, 인정대상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활동과 인정시간 및 인원 간에 합리성을 갖춰 계획하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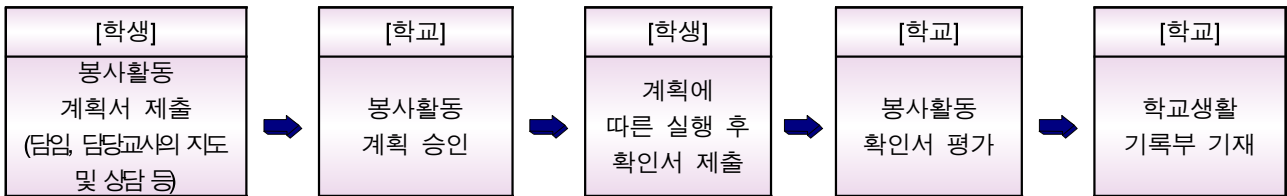
- 일과 시간(점심시간 포함) 중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나, 일과 시간 외(일과 전, 일과 후)의 활동은 인정한다.

예) 선도부가 아닌 학생의 학생선도 활동, 우유 분리수거 활동, 방송반이 아닌 학생의 방송 시설 관리 지원 활동, 환경도우미 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도서반이 아닌 학생의 도서실 도서 정리 활동 등이 일과 중에 이루어질 경우 인정하지 않음.

단, 수업 시간 이외(휴식시간, 점심시간)의 급식도우미, 장애학생급식 도우미, 부진아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등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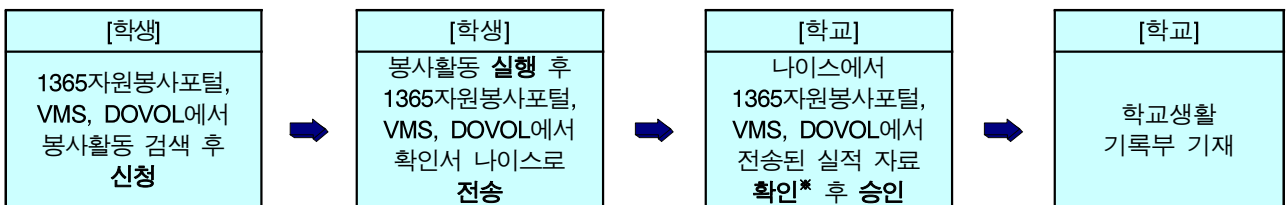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교원 업무 경감 지원

- 개인계획에 의한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학교장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필요 시 학교 사무 전결 규정을 담임(담당) 전결로 개정 가능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운영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구현하는 교육적 차원의 지도 목적임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실적연계사이트 나이스 전송 관련 안내

-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실적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 연계대상 실적 반드시 전송 처리를 하도록 안내
- 최소 해당 학년 중 2번은 꼭 확인 하도록 안내(연말, 학교별 생기부 마감 전)
- 올해 활동한 실적을 다음 해 3월 넘어 전송하려 하면, 선택할 수 없게 비활성화 됨(인정 불가)  
(위 내용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계획서를 받는 등 학교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 운영

※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개인 봉사활동 시간 인정 시 유의 사항**

-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충남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을 학생·학부모·담임교사 등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현장체험학습, 방학 중 등교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 봉사활동 평가

가.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다. 유의 사항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계획 수립, 학생봉사활동 지원 방법, 봉사활동 실적 인정(봉사활동 장소 및 시간, 해외 유학생 및 귀국 자녀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록 비치

-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반드시 안내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의의, 방법, 유의점, 절차 등) 및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전 안내하여 학생 봉사활동 인식 제고

### 【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예시 】

- ①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②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 ③ 문예 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④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⑤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⑥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 ⑦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에 참여 사례 등 봉사활동 인정 불가
- ⑧ 운동경기·공연 관람
- ⑨ 안전 저해시설 등 인증샷 찍어 올리기
- ⑩ 인구조사(각종 설문조사) 참여
- ⑪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⑫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하는 학생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
- ⑬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 VI.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1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기관·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담임(담당) 교사의 상담·지도 활동 및 승인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 인정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2) 영역별 지침 - (다) 봉사활동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2 |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여부			활동 인정 가능 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분 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합산 가능)
  - ※ 2시간 50분 = 2시간, 2시간 20분 = 2시간으로 입력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 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은 다음 학년도에 취합하여 학급 담임(담당)교사가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하되, ‘생활기록부 수정’ 메뉴를 활용하여 이전 학년(봉사활동 실시 당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 재학생의 3월 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새로운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단, 신입생의 경우, 사전 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활동기관 및 내용이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적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3 |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 ※ 봉사활동 관련 교육(또는 회의)과 직접적인 봉사활동 간에 연계 유효 기간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봉사활동 시작 직전, 동일 학년도 등)
    - (예시) 봉사활동 시작 직전 구호활동 교육(1시간) 후 피해 복구 활동(1시간 30분)을 한 경우 2시간 30분 인정
    - (예시) 교통안전 교육(1시간, 5월 11일) - 등하교 횡단보도 봉사활동(2시간, 6월 11일)이 연계되어 봉사활동을 한 경우 인정(3시간)
    - (예시) 교통안전 교육(1시간) 후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봉사활동이 없을 경우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불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
  - ※ 활동비를 내고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특별한 사유(전국체전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 식비 수준의 활동비(실비) 일부 허용 가능
  - ※ 지역 축제,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의 단순참여 불인정  
(예시) 걷기 대회(2시간) 후 환경정화 활동(1시간)을 한 경우 환경정화 활동 시간만 인정(1시간)  
(예시) 걷기 대회(2시간)를 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한 경우 불인정
- **(물품 및 현금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쓰레기 제작 기부 등
- **(헌혈)** 수업 시수에 관계 없이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학년도 인정 횟수 : **연간 3회 (전혈, 성분헌혈 포함)**
  - 헌혈활동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 ▶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학생·학부모 대상 헌혈 교육 추진(권장)
  - ▶ 헌혈 전 반드시 학부모 동의서 첨부
  - ▶ 헌혈 후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헌혈 봉사활동 동기, 목적 등 소감 기록

---

  -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 헌혈은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 (선플 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이외의 교내봉사활동) 급식 도우미, 학습(부진)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상담, 또래중재(조정, 중조) 등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해당되는 활동(해당 활동에 부수되는 활동 포함)은 봉사활동 인정 불가  
(예시) 학생회, 방송반, 도서반, 선도부, 당번 등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해당하므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강제적, 의무적으로 하는 활동은 자발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를 사전 확인한 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
  - ※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  
(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 ※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한 경우
  -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실시한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
- (기타) [붙임 1]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예시)』 참고
  - ※ 시간 인정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인정기준의 권장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봉사활동 인정 기준 시간 변경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절히 시행 가능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에 의하여 승인 시 결정(이 경우에도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활동내역을 확인 후 최종 시간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한 경우 :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시 결정

- 이 경우에도 1일 봉사활동 시간은 「8시간-수업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기타 봉사활동 등은 아래와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 조건**

가. 사단법인(비영리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증(기관 정관 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여부 확인 및 사업소개서)

나. 지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존재(설치신고필증)

다. 실버인력뱅크: 시 위탁(위탁서 첨부)

라.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시.도, 장관 이상)

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사.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아.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자.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기타: 학교 또는 지역사회 특성에 필요한 봉사활동(또는 봉사활동 기관)

❖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 사회봉사, 보호처분,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 푸드 마켓에 음식물 기부, 운동경기·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기, 인구조사 참여

✓ 안전저해시설 등 단순 인증샷 찍어 올리기

\* 사전교육-캠페인-안전신고-평가(보고서, 소감문 등) 등 봉사활동의 교육적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인정 가능

✓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 해외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 4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장소 및 지정 기관을 학생,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안내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 자원봉사센터(행안부)에서 인정한 기관: 1365자원봉사포털
      - <http://www.1365.go.kr> - 봉사참여 - 자원봉사수요처
    - ※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기관: VMS
      - <http://www.vms.or.kr> - 참여마당 - 봉사활동처 조회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에서 인정한 기관: DOVOL<sup>1)</sup>
      - <http://www.youth.go.kr> - 두볼(DOVOL) - 봉사활동 검색·신청·참여
- ☞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시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 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 되는 기관(단체)
- 

## 5

### 봉사활동 관련 단체 연계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http://nettores.cnyouth.or.kr>)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http://www.v1365.org>)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http://www.civo.net>)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http://www.kfvc.or.kr>)
- 각 시·군별 ‘지역자원봉사센터’

1) 두볼(Dovol)은 “Do Volunteer”(자원봉사 하다)의 약자로 국내 유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두볼(Dovol)은 봉사활동 정보검색, 신청, 확인서 출력은 물론 1365나눔포털을 통해 나이스(학생생활기록부)로 실적 전송이 가능합니다.

## VII. 행정 사항

### 1 교육지원청

- 2단위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점검 (초·중)
- 단위학교 봉사활동 추진 상황 점검 및 컨설팅(초·중)
  - 1교 1봉사활동 동아리, 가족봉사단, 사제동행봉사단 조직 활성화 권장
  - 봉사활동 운영 계획 점검·홍보
  -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봉사활동 운영 기준 준수

### 2 단위학교

- 충남교육청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단위학교 별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 자체 연수로 교원, 학생·학부모에 안내
-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봉사활동 실적인정에 관련하여,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
  - ※ 단, 실적인정에 있어서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타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 반드시 문의
- 학생이 개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인정기관 여부 및 시간, 활동 내역 등을 확인 후 실시
- 안전한 학생 봉사활동을 위하여 계획 승인 시, 기관, 영역, 내용, 안전 등을 검토하여 승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에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기재하여, 필요 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 학교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각종 서식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실시

## VIII. 참고 사항

### 1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중학교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77쪽)]

[고등학교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80쪽)]

\*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교육부 훈령 제365호]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2021. 1. 4., 일부개정>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 ④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 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 학생부 봉사활동 기록 참고 사항

-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 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
-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
- 기타 봉사활동 기록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 붙임 1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예시)

### 1. 활동 세부 내용별 권장 시간

#### 【봉사활동 기관에서 활동영역 구분 입력 방법】

지역사회봉사활동(이웃돕기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으로 구분 입력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베품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밀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일손돕기 재능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지도활동 재능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위문공연 재능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기 타	기타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시간 인정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학교에서 자율 결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 ③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④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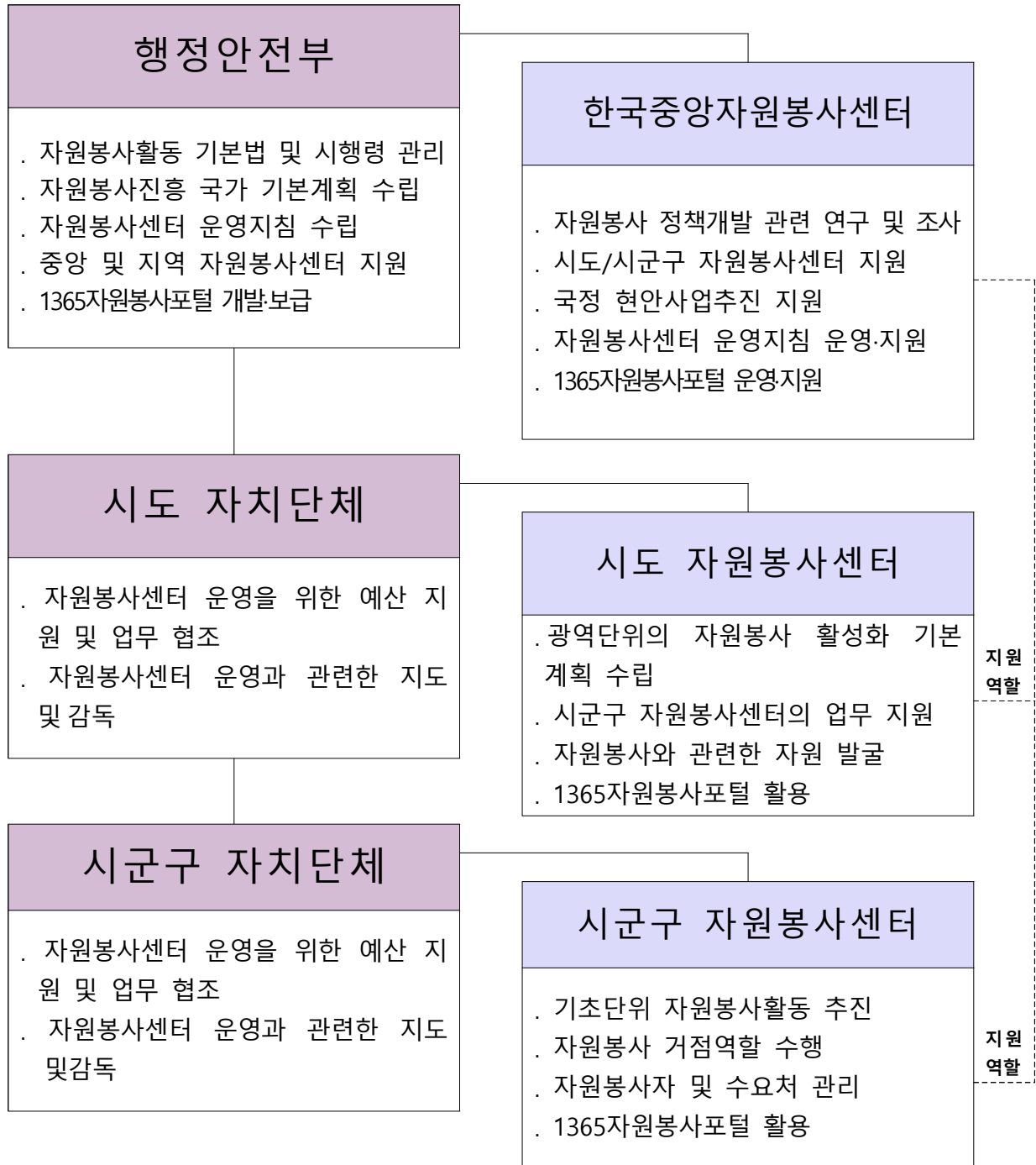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 붙임 3

### 봉사활동 추진 체계

□ 중앙 → 시·도 → 시·군·구 → 1365자원봉사포털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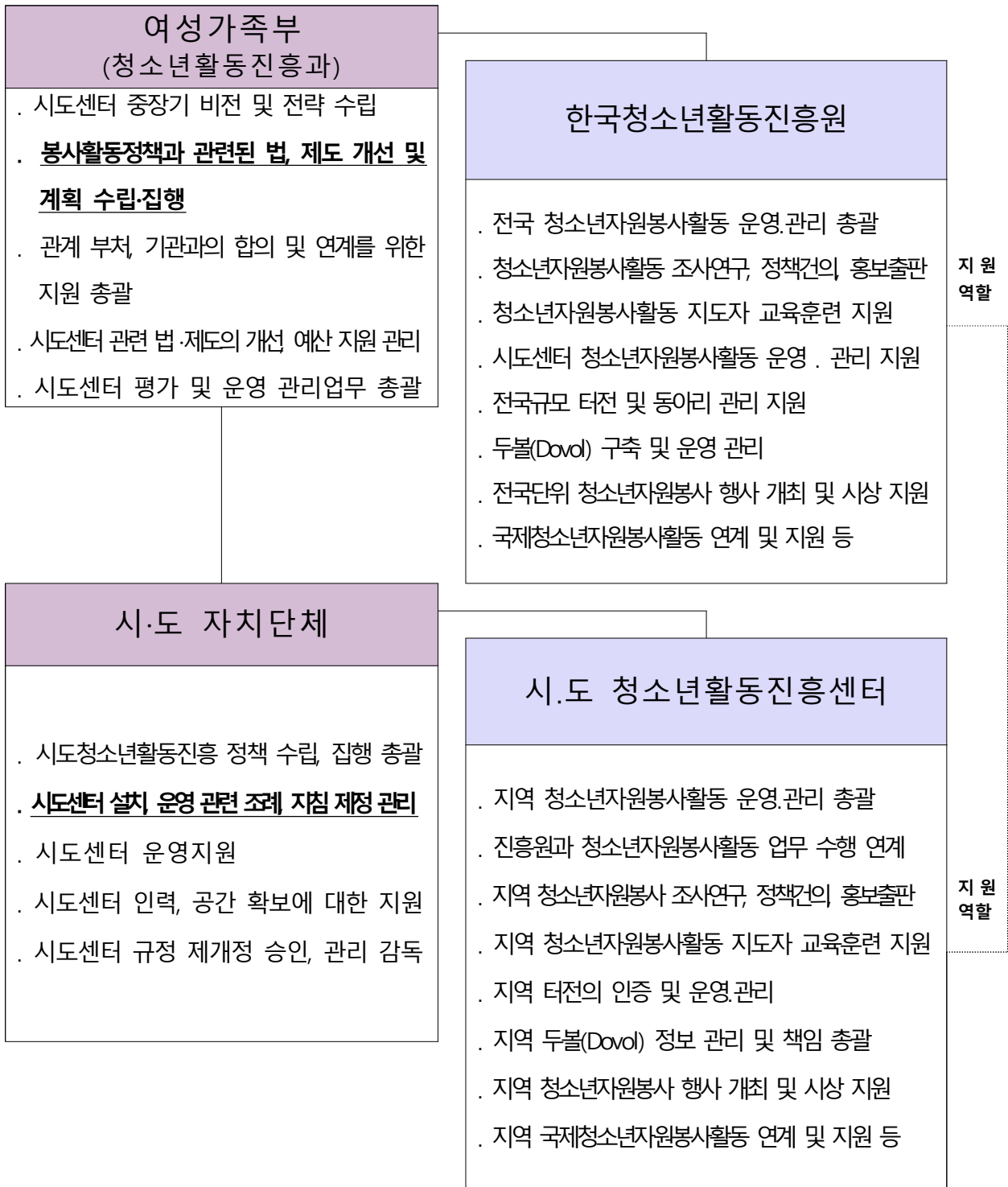


□ VMS(봉사실적 인증관리시스템) 추진 체계





□ DOVOL<sup>2)</sup>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 추진 체계



2) 두볼(Dovol)은 "Do Volunteer"(자원봉사 하다)의 약자로 국내 유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두볼(Dovol)은 봉사활동 정보검색, 신청, 확인서 출력은 물론 1365나눔포털을 통해 나이스(학생 생활기록부)로 실적 전송이 가능합니다.

**【문 1】 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 가능한가?**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함. 영리기관의 공익 목적의 활동인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 기준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에 적합하면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인정여부 결정

**【문 2】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는 인정하되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계획안, 활동결과물 등)를 제출해야 함.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 후 인정 여부 결정

**【문 3】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을 경우에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인정할 수 없음

**【문 4】 교육기관에서 평일 행사에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가?**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가능 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문 5】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시간은?**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4시간 인정

**【문 6】 학생 봉사활동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가?**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표는 1일 권장 사항이므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시간 변경은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 및 학생봉사활동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적의 시행

**【문 7】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

**【문 8】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 ①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②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 ③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④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⑤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⑥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 ⑦ 물품 및 현금기부
- ⑧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
- ⑨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⑩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 ⑪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⑫ 학생회, 방송반, 선도부, 당번 활동
- 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이 아닌 단순 참여
- ⑭ 인구조사(각종 설문조사) 참여

**【문 9】 해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는가?**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문 10】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위배되는 활동비를 요구하는 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는 자체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 활동비 허용 범위를 전면금지 또는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실비) 일부 허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일부 허용한 경우 세부기준과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

**【문 11】 정부기관의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도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정부기관의 자원봉사 포털 1365자원봉사포털, DOVOL, VMS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예) 물품·재료구입 및 제작·기부활동, 활동비나 후원금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 단순 체험·관람 프로그램,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 하는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등은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음.(재료 구입 후 뜨개질 제작 기부, 참가비 내고 참여하는 유적지 탐방 등)

**【문 12】 학생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모두 인정해야는가?**



봉사활동 사실이 명확할 경우 인정함. 그러나 애매한 경우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하며, 이때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단체)에 해당 학생의 봉사활동 여부 및 활동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문 13】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환경정리는 인정 가능한가?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함. 아파트는 자체 관리비를 징수하여 용역이나 인부를 고용하여 환경정리를 하는 곳이므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없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로 인정할 수 있음

- 연간 또는 월간 계획에 의거 아파트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변 환경정리나 경로행사 등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실적
-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문 14】 1·2학년 종업식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



1·2학년 종업식 이후 봉사활동은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마감이나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문 15】 종교 단체에서의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단체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단, 종교 단체에서 계획하여 외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실질적 활동 내역의 공익성을 검토(포교 활동 등 종교적 활동은 안됨)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사전 봉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문 16】 정부기관의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도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정부기관의 자원봉사 포털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DOVOL(dovol.youth.go.kr), VMS(www.vms.or.kr)] 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충남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문 17】 확인서에 수요처가 사회 복지시설이 아닌 자원봉사관리센터로 나오는 것도 인정 가능 한가요?**



수요처가 복지시설이 아닌, 자원봉사관리센터로 나오는 것도 인정 가능함. 그러나 실질적인 봉사활동 수요처의 내용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충남교육청의 당해연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과 각 학교별 기준에 저촉됨이 없어야 함.

**【문 18】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봉사활동을 한 경우 실적을 인정 받는 방법은?**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를 사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시한 실제 봉사활동은 그 시간을 인정해 줌, 단,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문 19】 고등학교 학생의 봉사활동 이수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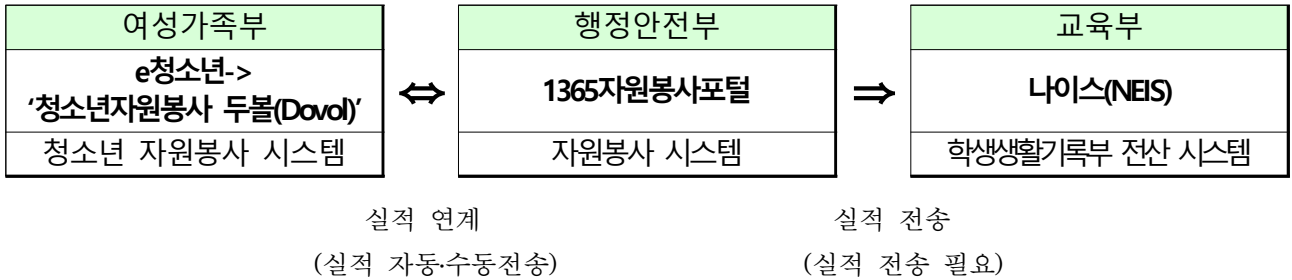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교장 자율,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자율결정입니다.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진학의 경우 학과, 대학) 이수하여야 하는 시간의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학생선발권을 가진 대학의 입학전형에 따라 봉사활동을 반영여부가 다르므로 고등학교 학생의 개인 봉사활동 이수 시간은 학생 자율 결정 사항입니다.

## 붙임 5

# Dovol(두볼)-1365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안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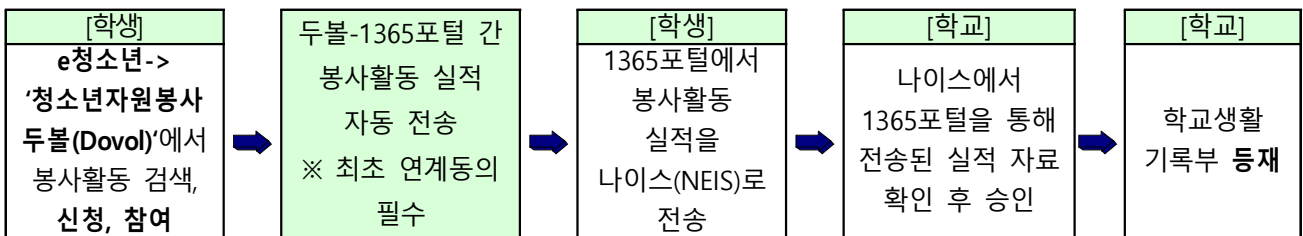
### □ 안내사항

-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http://www.youth.go.kr)) 에서 청소년자원봉사 두볼(Dovol) 접속
- 두볼 회원의 경우 기존 계정으로 e-청소년([www.youth.go.kr](http://www.youth.go.kr)) → ‘청소년자원봉사DOVOL’ 이용 가능



### □ 요청사항

- 두볼을 이용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에 담임교사와 활동 내용 상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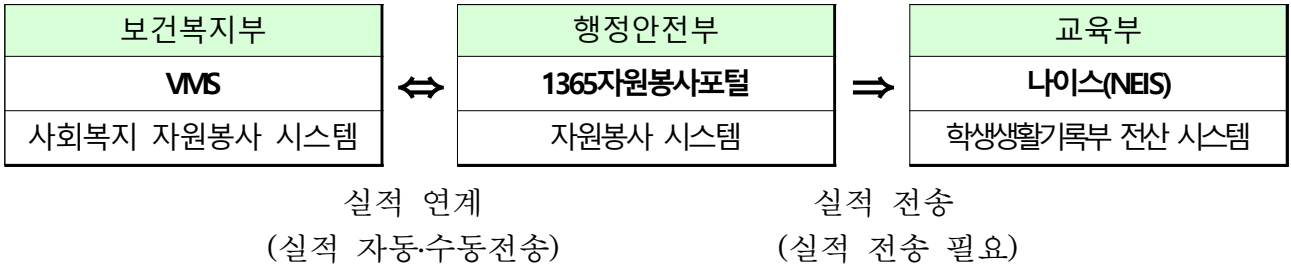


- 담임교사는 나이스에 직접 등록된 봉사활동 실적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실적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요망
- 학생이 직접 청소년자원봉사 두볼(Dovol) 참여실적을 1365포털사이트를 통해 나이스로 전송하도록 지속적 안내
  - ※ Dovol 봉사활동 참여 실적이 나이스로 자동 전송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는 사례 발생
- 실적 연계 사이트(1365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별 자체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한 경우 시도교육청별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붙임 6

## VMS-1365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안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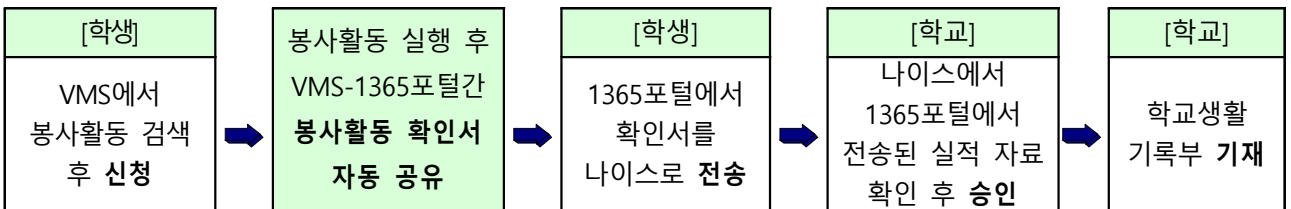
### □ 시스템 구성



※ VMS와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두 곳 모두에서 실적정보 연계에 동의

### □ 안내 및 요청사항

- VMS를 이용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에 담임교사와 활동 내용 상담 필요



- 담임교사는 나이스에 직접 등록한 봉사활동 실적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실적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요망
- 두블 혹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학생이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요청

※ 봉사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나이스로 자동 전송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는 사례 발생

- 실적 연계 사이트(1365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자체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한 경우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붙임 7** 학생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예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인적 사항	학교 제 학년 반 번 성명 :
활동 일시	기간 : 2021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총( )시간 예정
활동 장소	(☎ 연락처)
활동 영역	이웃돕기 활동( ) 캠페인 활동( ) 환경보호활동( )
활동 내용	
<p>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21년 월 일</p> <p>신청학생 : 학년 반 번 성명 (서명 또는 날인)</p> <p>위의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합니다.</p> <p>○○학교장(부장, 담당교사) : (서명 또는 날인)</p>	

※ 활동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활동영역에 맞추어 수정해 사용

학생봉사활동 확인서

인적 사항	학교 제 학년 반 번 성명 :
활동 일시	활동기간 : 2021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활동시간 : 총 시간(총 회)
활동 장소	
활동 영역	이웃돕기 활동( ) 캠페인 활동( ) 환경보호활동( )
활동 내용	
평가 의견	
<p>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2021년 월 일</p> <p>확인자 직책(직위)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확인기관 전화번호 : <b>확인기관명 : (직인)</b></p>	

※ 확인기관에서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주시기 바라고, 확인서 사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사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8****학생 단체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예시)****단체 봉사활동 계획서**

참가학생	( ) 학교(단체), 총 ( ) 명		
활동일시	2021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총 시간)		
활동장소		활동영역	
활동내용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지도교사 : (인)			

**단체 봉사활동 확인서**

학교명(단체명)					
활동 일시	2021년 월 일 시 분 ~ 2021년 월 일 시 분 (총 시간)				
활동 장소		활동영역			
활동 내용					
<b>▣ 참가 학생 (총 명)</b>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직책(직위)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기관 전화번호 :					
<b>확인기관명 :</b>		<b>(직인)</b>			

※ 확인기관에서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주시기 바라고, 확인서 사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사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봉사활동 계획서는 내부결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봉사활동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학생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계획(학교 홈페이지 탑재)을 살펴보고 봉사활동 인정기관 여부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녀의 봉사활동 실시에 관해서는 담임 또는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계획서를 승인받고 실시하며 봉사활동 시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 연계 대상 실적 반드시 전송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 해당 학년 중 2번은 꼭 확인(연말, 학교별 생기 부 마감 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올해 활동한 실적을 다음 해 3월 넘어 전송하려면, 시스템이 선택할 수 없게 비활성화되어 실적을 인정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4.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능한 봉사활동 영역을 확인하며, 자녀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 학교 장